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372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전담간호사 자격 신설	3

I. 개요

1.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37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6. 4. 16.

(3) 회 부 일 : 2026. 4.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간호사의 범위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간호사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자격명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그 명칭이 다양하고 상이하여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또한 진료지원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여 해당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명칭을 ‘전담간호

사'로 규정하고, 전담간호사의 자격인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사 명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5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전담간호사 자격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전담간호사 자격을 신설하고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담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며, 그 자격을 갖춘 경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제5조의2 신설 및 제14조).
- 또한,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담간호사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한 후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그 등록대장은 전담간호사별로 따로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전담간호사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과 대여받는 것 그리고 그 대여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함과 동시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교육전담간호사의 명칭을 교육간호사로 변경함(안 제13조의2 신설, 제10조, 제11조, 제31조 및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전담간호사”란 제5조의2에 따른 자

3. (생략)

4. “간호사등”이란 간호사·전문간호사
· 간호조무사를 말한다.

5. 6. (생략)

<신설>

제10조(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조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에 따른 면허를 내주거나 자격인정을
할 때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 또
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등록대장은 간호사·전문간
호사· 간호조무사별로 따로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1조(면허 대여 금지 등) ① 간호사등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
라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받아서

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전문간호사
· 전담간호사-----.

6. 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5조의2(전담간호사 자격인정) ① 보건복
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외에 전담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전담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
정 이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담간호사 자
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전담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조건) ①
-----제4조·제5조·제5조
의2 및 제6조-----

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간호
사·전담간호사-----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면허 대여 금지 등) ① -----
-제4조·제5조·제5조의2 및 제6조-----

-----.

② -----제4조·제5조·제5조의2
및 제6조-----

는 아니 되며, 면허 또는 자격의 대여
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 설>

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① 제12조제
2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생 략)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할 것

② (생 략)

제31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
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간호현장에 근무
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특
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로 설
치·운영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제32조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교
육

8. (생 략)

② ~ ④ (생 략)

제32조(교육전담간호사) ① 병원급 의료기
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
사, 간호대학생(이하 이 조에서 “신규간
호사등”이라 한다)에게 직무수행에 필

-----.

제13조의2(전담간호사의 업무) ① 전담간
호사는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
여야 한다.

②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① -----

-----.

1. (현행과 같음)

2. 전담간호사 자격-----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
영)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교육간호사-----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교육간호사) ① -----

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u>교육전담간호사</u>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u>교육전담간호사</u>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u>교육전담간호사</u>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4. (생략)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u>교육전담간호사</u>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u>교육전담간호사</u>의 배치 대상과 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 신규간호사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u>교육간호사</u>----- -----<u>교육간호사</u>----- -----. ② -----<u>교육간호사</u>----- -----. 1. ~ 4. (현행과 같음) ③ -----<u>교육간호사</u>----- -----. ④ -----<u>교육간호사</u>----- ----- -----.
--	--

※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자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담간호사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봄

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법」, 「노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상 “「간호법」 제2조제3호”를 “「간호법」 제2조제4호”로 함

나. 검토의견

□ 「간호법」 제정 이전 구 「의료법」¹⁾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 규정

1) 구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하였고, 대법원 판례²⁾는 의료행위를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와 ‘간호사에게 지시·위임이 가능한 의료 행위’³⁾로 구별하였음.

□ 이에 그동안 간호사로서 의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등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는 현장 수요에 따라 음성적으로 수행되고 있었으나 「간호법」 제정(2024.9.20. 제정, 2025.6.21. 시행)에 따라 법제화되었는데, 현행법 제14조⁴⁾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할 것을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하여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 한편,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 보유의 경우 병원, 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간호사로서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론교육, 실기교육 및 현장실습교육을 포함한

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590 판결

“가.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호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 항 제5호는 ‘간호사는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2306 판결 등 참조).”

3) 판례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를 때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로는 간단한 문진, 활력증후측정, 혈당측정, 채혈 등 ① 진단보조행위, 일반적인 피하·근육·혈관 등 주사행위, 수술 진행보조 및 병동 진료실에서의 소독보조, 혈관로 확보, 소변로 확보, 관장 등 ② 치료보조행위,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조제·투약 등을 돕는 ③ 약무보조행위 등이 있음.

4) 「간호법」 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할 것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이 요구됨⁵⁾.

□ 관련하여 진료지원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자격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⁶⁾이 제기되었음.

- 특히, 전문간호사가 아닌 진료 지원 간호사는 자격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국가 수준의 프로그램, 표준화된 업무 지침이 부재한 상태에서 병원의 발령에 의해 업무를 시작하는 실정으로, 이는 업무 수행의 모호성을 높여 직무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과 함께 그에 대한 대책으로 공인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

5)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시행 2026. 8. 11.] [보건복지부령 제1187호, 2026. 7. 10., 제정] 제5조(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 임상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서 총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병원

제6조(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 역량
2. 분야별 질환 및 치료에 대한 이해
3. 시술 및 처치에 관한 지식 및 절차
4.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를 위한 지식 및 절차
5.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건의료 윤리 준수

② 교육과정은 이론교육, 실기교육 및 현장실습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 교육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이수 과목 및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의학신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자격증’ 아닌 ‘이수증’ 필요 없다”, 2025.6.2.

“특히 이날 간호사들은 ‘교육 이수증 찢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단순 교육 이수증만으로 부여하겠다는 주장에 반박하며 약 1m사이즈로 제작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 이수증을 찢은 것이다. 퍼포먼스에서는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박인숙 제1부회장, 현장 간호사 대표들이 무대에 올라 복지부의 일방적 법 추진을 상징하는 ‘이수증’을 찢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진료지원업무는 단순한 이수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외쳤다.“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0123>

의학신문, 간호계, ‘진료지원 간호사 자격제’ 목소리 한 번 더, 2025.7.3.

“이지아 경희대 간호대학 교수(간협 전담간호사 제도마련 TF위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전담간호사 교육 체계 확립과 분야별 자격 구축이 필요하다”며 “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진료지원행위 교육 및 연수기관을 총괄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전담간호사 인력에 대한 적정인력 기준과 함께 자격관리를 언급했다. (중략) 특히 오 국장은 자격제와 관련 “간호사 임상경력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교육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전담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향후 자격증제도 도입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는 이수만 하면 되도록 돼 있지만 절대 지속가능 하지 않다”며 “저희는 민간 자격증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무조건 국가 자격증을 뒤야 한다. 환자별로 국가자격증을 확보해 좀더 확실한 제도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2488>

노컷뉴스, [기고]전담간호사, 안전한가?, 2026.4.30.

“전담간호사 업무의 합법화를 시작으로 지금은 환자 안전과 전문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자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시점이 되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510683?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60430104241

이 제기되었음⁷⁾.

- 즉, 현행법에 따르면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 외에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만으로도 진료지원업무가 수행이 가능하나, 개정안은 이와 같은 지적을 고려하여 전담간호사 자격을 신설하고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을 거치도록 하며, 전문간호사 자격 또는 전담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진료지원업무의 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자격시험을 전제로 하는 전담간호사 자격 신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부터 의료현장의 진료 공백 해소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 해소를 위하여 진료지원업무를 포함한 간호사의 자격별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는데, 해당 시범사업에서는 현행법과 같이 전문간호사 자격 또는 임상경력 및 교육이수를 요건으로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권고하였으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큰 차질이 발생한 바 없다는 설명임.

또한, 「간호법」은 2024년 9월 제정되어 2025년 6월 시행되었으나, 진료지원업무를 규정한 동법 제14조에서 위임한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인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서는 2026년 8월에 이르러서야 보건복지부령이 마련되어 현실적으로 시행 초기

7) 박재은·박보현·구영미, 우리나라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역할갈등에 관한 주제 범위 문헌 고찰, 임상간호연구 31(3), 2025년 12월

라는 점에서 시행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에 따라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을 자격 시험 형태로 제도화할 경우, 필요한 규모의 진료지원 인력이 적기에 충원되지 못하여 진료지원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⁸⁾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셋째, 자격시험을 전제로 하는 전담간호사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 기 규정된 전문간호사 자격과의 차별점이 모호하게 되는 측면⁹⁾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전문간호사로 자격을 일원화하는 방안¹⁰⁾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현재 표준교육과정 개발('26년) 및 교육기관 지정·평가 예비도입('26.下예정) 등 자격관리체계를 구축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임상 경력과 교육과정 이수 중심의 현행 체계 정착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제도 운영 성과, 전문간호사 제도와 관계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격시험 도입의 필요성·타당성 연구 등을 통해

8) 대한병원협회 의견 참고

9)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문간호사 자격은 개정안에 따른 전담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설명임. 관련하여 병원간호사회는 전담간호사 제도는 기존 전문간호사 제도와 역할·범위·자격 체계에서 중복 또는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0) 김정혜·전미경·최수영·이미미·최수정, 상급실무제공자 역할로서 간호인력 활성화 방안:혼합연구,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25, 2025년 11월
“단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을 한시적 대안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이 마련된 전문간호사제도를 통해 상급실무제공자를 일원화하여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격시험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 있음.

- 한편, 전담간호사라는 자격 명칭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타 법령의 전담간호사¹¹⁾ 명칭과 혼동될 수 있고, 간호법 하위법령에서 ‘진료지원전담간호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전담간호사’ 명칭을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수정하여 수행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고 법률과 하위법령간 명칭을 일치시킬 필요 있음.

□ 대한간호협회

- 현행 「간호법」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의 자격이나 명칭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현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한 명칭이 의료기관 별로 상이하여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이들에 대한 자격 관리 체계가 없어 해당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라는 명칭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PA’와 같은 비공식적인 명칭 사용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또한, 자격 제도 도입으로 자격 기준이 명확해지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간호사들이 불명확한 지위 속에서 책임만 떠안는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음. 즉,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면 책임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음.

1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전담간호사’
「전공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전담간호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응급실 전담간호사’

어저업무 수행 시 법적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고, 자격 제도의 도입으로 표준화된 자격 요건과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환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전담간호사 자격의 표준화와 공신력 확보는 전담간호사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 기존 전문간호사 제도와 차별성을 확보하고 전문간호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등의 오해를 불식시켜 의료현장에서의 혼란 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국가 차원의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법적 회색지대를 해소하며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본 개정법률안에 적극 찬성함.

□ 병원간호사회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명칭을 별도로 규정하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현재 임상현장에서는 ‘교육전담간호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담간호사’라는 용어가 이미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 단순히 ‘전담간호사’로 규정할 경우 역할과 기능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임상전담간호사’로 기능적 특성이 반영된 명칭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제안함.
- 또한, 국가 차원의 자격인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법적 보호체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책임 소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현재 전문간호사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

구하고 별도의 자격을 신설하여 부여하는 것은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될 경우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특히 전담간호사 제도는 기존 전문간호사 제도와 역할·범위·자격 체계에서 중복 또는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전문간호사 제도와의 관계 정립, 의료현장, 간호계, 학계 등 이해관계자 간 실질적 협의, 제도 도입에 따른 인력 운영·보상체계 변화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현장 수용성 및 제도 지속가능성 검토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

- 따라서 초기 단계에는 공인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되, 중소병원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 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함.
- 한편, 교육전담간호사의 명칭을 교육간호사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시행규칙」과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를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일정 기준 이상의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임상경력과 양성교육 이수 등 별도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전담간호사를 일반간호사와 구별되는 전담·전문 인력으로 육성하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명칭을 ‘교육전담간호사’에서 ‘교육간호사’로 단순화하는 것은 이미 구축 중인 전문 인력 체계를 ‘일반 간호사의 부가 업무’ 수준으로 인식시키고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국내 제도적 기반, 국제 기준, 정책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는 당초 취지대로 ‘전담·전문 인

력'이라는 성격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법률상 명칭을 현행 '교육전담간호사' 명칭을 유지하여 이미 마련된 양성교육·자격·배치 기준과의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NPD(Nursing Professional Development Practitioner/Specialis)와 유사한 전문자격·인증체계 연계 등 전문영역으로의 발전을 도모할 것을 제안함.

□ 한국전문간호사협회 · 한국중환자간호학회

- 의사의 경우 「의료법」에서 의사 면허, 전문의 자격으로 자격체계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간호법」에 간호사 면허, 전문간호사 자격 외에 중간 단계로 별도의 자격제도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보험심사간호사의 경우도 이와 같은 이유로 별도의 자격을 두지 않고, 민간자격증으로 유지하고 있음. 기존에 간호사, 전문간호사 제도가 있는데 별도로 '전담간호사'를 둔다면 '보험심사간호사' 등 간호의 다양한 업무를 하는 모든 분류를 법에 추가해야 함.
- 아울러, 검증된 질적 교육과정과 자격제도가 있는 전문간호사와 별도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담간호사를 두는 것은 진료지원업무의 수행자의 기준을 하향시킨다는 의미임. 전담간호사 자격증 제도화는 과거 2년제 신설요청과 마찬가지로 전문간호사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 보장이 안되는 인력을 양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간호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폄하하는 조치와 유사함.
- 진료지원업무 특성상 실습이 강화되어야 하며, 전문간호사는 교

육과정 내에 30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이 편성되어 있음. 양질의 인력 양성을 위해 전담간호사를 위한 제3의 교육체계 마련에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기존 전문간호사교육과정을 통해 진료지원 인력 양성을 일원화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근거가 없음. 또한, 전담간호사를 위한 별도의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분석과 현실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그리고 이들을 위한 양질의 실습기관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 한편, ‘전담간호사’를 자격제도화하기 위해서 기존 ‘교육전담간호사’의 명칭에서 ‘전담’ 용어를 빼는 것은 실질적 의미가 없음. 간호사를 교육하는 ‘교육전담간호사’는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의료기관에서조차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선호하고 있음. 이는 전문성이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함. 향후 교육전담간호사도 전문간호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수 있는데, 단지 ‘전담간호사’ 자격증을 제도화하기 위해 ‘교육간호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함.

□ 한국전문간호사교육협의회

- 우리나라에는 ‘전문간호사’가 지난 20여년 간 체계적으로 배출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국가 차원의 역할 범위가 모호하고 명확한 지위가 보장되지 않아 공식적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유명무실하여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 「간호법」 제14조에 의해 공식적으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 상태로 여전히 역할이나 업무 범위가 모호함.

-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 제14조에 의해 전문간호사 이외의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게 국내 전문간호사와 동일하게 ‘자격인정’ 및 ‘업무’를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현재 간호인력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직역 간 갈등 발생과 업무 범위의 중복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전문간호사 제도는 세계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이미 대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환자 결과 및 의료의 질 향상 효과가 입증된 상태임. 그러므로 새로운 직역을 신설하기보다는 앞으로 기존 국내 전문간호사 제도를 기반으로 국민건강 수호 및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됨.
- 한편, ‘교육전담간호사’를 ‘교육간호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간호사를 교육하는 간호사는 최소 석사 수준의 지식과 전문가 수준의 임상경험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전문간호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요청함. 현재 국내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서는 이미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학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전문간호사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미국의 경우에도 전문간호사(CNS)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효과가 입증된 상태임.

□ 대한의사협회

- 본 개정안은 ① 시범사업 평가 등 선결 절차를 생략한 채, ② 기존 전문간호사 제도와 중복되는 별도 자격을 신설하고, ③ 핵심 업무범위를 시행규칙에 백지위임하는 구조로서, 환자안전과 의료체계 정합성 모두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함. 새로운 국가 자격체

계를 도입하면서 의료 전문가단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률적인 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그간 축적된 전문 의료 교육체계를 훼손하는 등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한 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된 이후 개정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개정에 반대함.

- 첫째, 현재 진료지원간호사 제도는 하위법령 단계에서 도입을 진행 중으로, 개정안은 교육체계, 업무 범위, 책임 구조 등에 대한 현장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계적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법률 단계에서 자격을 확정하는 내용임. 특히 시범사업의 환자안전 영향, 의료 질 개선 효과, 운영 경험에 대한 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의 수축과 체계적 분석이 충분히 이뤄지지 상태에서 자격을 신설하는 것은 근거 기반 정책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둘째, 개정안에 따른 전담간호사 자격은 임상경력, 교육과정 이수, 시험을 통해 부여되는 구조이나, 현재 관련 제도는 교육과정의 표준화 미흡, 교육기관(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등) 간 질적 편차 존재, 평가 및 인증체계 미확립, 실습 기반 역량 검증체계 부재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전담간호사 자격을 법률로 신설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교육체계를 국가자격으로 공인하는 것과 다름없음.
- 셋째, 현행 의료체계에서는 2000년 의료법 개정 및 2003년 시행령에 근거하여 전문간호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인력은 석사과정 기반 교육과 국가시험을 통해 양성되고 있음. 기 양성

된 전문간호사 풀의 활용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은 별도의 '전담간호사' 자격을 신설함으로써 정책수단의 과잉을 초래하고 있음. 그 결과 동 개정안은 동일한 진료지원업무 영역에서 이중 자격체계 발생,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간 역할 및 권한 중첩, 자격 간 위계 및 기준 불명확성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기존 전문간호사 제도의 권위와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면허 기반 의료체계 전반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넷째, '진료지원'이라는 용어는 업무의 뿌리가 진료에 있음을 내포하지만, '전담간호사'는 해당 업무가 간호사의 고유하고 독립적인 영역인 것처럼 비칠 수 있음.
- 다섯째, 업무의 본질적 차이를 간과한 채 '전문간호사' 관련 조항을 기계적으로 준용한 법적·개념적 오류가 있음. 특히 안 제13조의2는 전담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나, 전담간호사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므로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지원 업무라는 종속적 성격이 명시되어야 함. 이를 간호사 고유의 전문 업무인 것처럼 규정하는 것은 업무 침범 문제를 은폐할 소지가 큼.
- 여섯째, 의사의 경우에도 전임의·전공의·수련의 등을 「의료법」에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간호사의 모든 종류의 자격을 세세하게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타 법과의 체계상 부적절함.
- 일곱째, 개정안은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에서는 자격만 규정하고 실제 업무 범위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구조로서, 행정부 판단에 따라 업무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을 내포하는 등 포괄위임에 해당함.

- 여덟째, 현행 법체계는 진료보조행위에 대해 '의사의 지시·지도하의 수행'이라는 법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의료사고 발생 시 사용자책임·감독자책임이 의사에게 귀속되는 구조인데, 전담간호사 자격이 법제화될 경우 업무 권한은 확대되는 반면, 법적 책임 구조는 여전히 의사 중심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바, 이는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의 불명확성과 무면허 의료행위 경계 문제를 초래하여 법적 분쟁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 아홉째, 전담간호사 법제화는 병원 운영자에게 전공의 대신 전담간호사를 활용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전문의 양성 체계가 약화될 수 있고, 이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열째, 개정안은 경과조치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존 인력을 전담간호사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함. 특히 중소병원에서 운영되는 진료지원 인력까지 별도의 검증 없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단기적으로 의료현장의 안정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자격의 질적 수준 저하와 제도 신뢰성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대한병원협회

-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자격명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나, 현재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명칭 및 자격요건, 업무범위, 대상 의료기관, 교육, 수행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 및 관련 고시안 등 하위법령 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우려하는 바는 하위법령 마련 및 시행 시 해소될 것임. 자격시험 실시 등 국가 차원의 전담간호사 양성 체계 운영은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할 때 업무범위 확정 및 교육 운영 등 제도 안정화 이후 현장 및 전문가와의 중장기적 논의를 통해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첫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공청회('25.5.21.)에서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의 목적을 존재하지 않았던 인력 양성이 아닌 그간 업무를 수행해 온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자격증 발급은 지식과 기술 수준 및 수행 역량의 전문성에 대한 인증이므로 추후 제도 성숙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음
- 둘째,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정부와 전문가 간의 논의에서도 별도 직역 신설 이전에 현행 진료지원인력 운영체계의 시행 및 제도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함.
- 셋째, 병원 종별·규모별로 진료환경 및 특성이 상이하여 수행하는 진료지원업무의 종류와 분야가 다양하므로 단일한 국가 자격시험만으로는 현장의 실무적 요구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우며, 자격시험보다는 교육의 지속성과 현장성을 반영한 실습형태의 교육 이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실효적임

- 넷째, 자격시험 형태로 제도화할 경우 당장 현장에서 필요한 진료지원인력을 적시에 충원하지 못하여 진료공백이 발생하거나 또다시 음성적으로 수행하게 될 우려 있음
- 다섯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타 보건의료인력을 고려하지 않고 간호사만 한정하여 자격화할 경우 직역 간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4